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0 발의연월일: 2025. 1. 6.

발 의 자:이춘석・위성곤・정준호

이연희 · 김윤덕 · 윤준병

윤종군 · 김영환 · 이원택

이학영 · 안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 규정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협에 노출되고, 상해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치료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면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 도록 하여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체· 정신상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 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이하 "소방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형법」 제2편제25장, 제30장, 제33장 또는 제42장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 폭력범죄 행위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그 밖에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소방청장은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
	한 보호조치) ① 소방청장 또
	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
	원이 소방활동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소방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방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
	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
	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u>하여야 한다.</u>
	1. 「형법」 제2편제25장, 제30
	<u>장, 제33장 또는 제42장에 해</u>
	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
	<u>정보 유통 행위</u>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그 밖에 치유와 회복에 필요 한 조치
-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 에게 소방활동 침해행위의 내 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소 방청장은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 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동의를 받 아야 한다.